

## 제 8 장 인력 이동

### 제 8.1 조 일반원칙

1. 이 장은, 국경 안전보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 간의 특혜적 무역관계와 자연인의 일시적 입국을 양립할 수 있는 기초 위에서 촉진하고 이를 위한 투명한 기준과 간소화된 절차를 수립하려는 양 당사국의 상호 의사를 반영한다. 이 장은 당사국간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하여 제2장(상품무역), 제6장(서비스무역) 및 제10장(투자)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에 부수되는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장은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나 국적·영주 또는 영구적인 고용에 관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장에 포함된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토의 일체성을 보전하고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입국 또는 일시적 체류를 규율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이 협정에 의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부당하게 손상시키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무역, 또는 투자활동의 수행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 8.2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에 입국하는 당사국의 다음과 같은 자연인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 가. 당사국의 서비스판매자
  - 나.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
  - 다. 당사국의 상품판매자

- 라.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 투자한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 마.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 투자한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하여 고용된 자

2. 이 장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 가. **당사국의 자연인**이란 제6장(서비스무역)에 정의되어 있는 당사국의 자연인을 말하고, 구체적으로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국민만을 포함한다.
- 나. **입국비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영주할 의사 없이 주재국 영역에 거주·취업 또는 체류할 권리를 보장하는 취업비자 또는 상용비자를 말한다.
- 다. **일시 입국**이란 상용방문자·기업내 전근자 또는 전문가가 영주할 의사 없이 명백히 상용목적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당사국에 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 라. **서비스 판매자**란 일반 공중에 대하여 직접 판매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의 대리인으로서 서비스 공급자를 위하여 서비스 판매를 교섭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자연인을 말한다.
- 마. **상품 판매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일반 공중에 대하여 직접적인 판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산업 또는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기업에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통 또는 소매 판매 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자로서 공산품 또는 농산품의 제조·생산·공급 또는 유통에 종사하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자연인을 말한다.
- 바. **전문가**란 전문지식을 이론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다음을 요구하는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자연인을 말한다.
  - 1) 취업을 위하여 최소 3년 또는 그 이상의 학업을 요구하는 전문 분야에서의 중등과정 이후의 학위(또는 그러한 학위에 상응하는 것) 취득. 이러한 학위는 대한민국 또는 인도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수여된 학사·석사 및 박사를 포함한다. 그리고
  - 2) 규제가 적용되는 전문직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경우, 상용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관련 당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화된 등록·허가 또는 자격
- 사. **상용방문자**란 당사국의 다음의 자연인을 말한다.

- 1) 서비스 판매를 위하여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위하여 서비스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입국하는 서비스 판매자,
- 2) 상품 판매에 관한 협상이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적인 판매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협상을 목적으로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자, 또는
- 3) 아호에 정의된 관리자·임원 또는 전문가로서 투자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피고용인

아. 기업내 전근자란 아래에서 “조직”으로 언급된 서비스 공급자, 제6장 (서비스무역)에 규정된 범인, 투자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지점·자회사 또는 제휴회사 형태로 설립된 회사의 피고용인을 말하며, 일시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 고용된 자로서 아래와 같이 정의된 관리자·임원 또는 전문가를 말한다.

- 1) 관리자란 주로 조직, 또는 그 조직의 부서 또는 과를 지휘하고 그 밖의 감독관·전문가 또는 관리자급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며 고용하고 해고하거나 승진 또는 휴가의 허가와 같은 그 밖의 인사 조치를 취할 권한을 보유하고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 재량권을 행사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감독받는 피고용인이 전문가가 아닐 경우, 제일선의 감독관은 관리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서비스의 공급 또는 투자 운영에 필요한 직무를 주로 수행하는 직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언급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리자가 서비스의 공급 또는 투자 운영에 필요한 직무를 부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아니한다.
- 2) 임원이란 주로 조직의 관리를 지휘하고 의사결정시 폭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상위급 임원·이사회 또는 회사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시만을 받는 자연인을 말한다. 임원은 실제적 서비스 공급 또는 투자 운영에 관련된 직무를 주로 수행하지는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언급된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임원이 서비스의 공급 또는 투자 운영에 필요한 직무를 부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아니한다.
- 3) 전문가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조직의 서비스·연구·장비·기술 또는 관리에 대한 관련 지식을 보유한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전문가는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자. 계약서비스 공급자란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적합한 교육 및 그 밖의 자격을 갖추고 다른 쪽 당사국에 상업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며 다른 쪽 당사국 법인과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어느 한 쪽 당사국 법인의 피고용자로서 계약 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서비스 공급자는 입국허가 신청일 직전 1년 이상 그 법인의 피고용자이어야 한다.
- 차. 독립전문가란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적합한 교육 및 그 밖의 자격을 갖추고 다른 쪽 당사국의 인과 서비스 공급 계약 하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영업자를 말한다.<sup>1)</sup>

### 제 8.3 조 일시 입국의 허용

- 각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공중보건·안전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적용 가능한 조치에 따라 달리 입국 자격을 갖춘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에 대하여 일시 입국을 허용한다.
-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 특히 제6.8조(인정)에 따라 상호 인정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전문직 종사자의 체류연장 요청을 포함한 일시입국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각 당사국은 체류기간 및 그 밖의 조건을 포함한 최종 결정 결과를 일시 입국 신청자에게 직접 또는 그의 장래 고용인에게 통지한다.
-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일시 입국이 허용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자연인은 주재국에서 사회보장기금을 납부하도록 요구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경우 그 자연인은 체류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국의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 당사국은 일시 입국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상용목적 방문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입국 비자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 고용장소 또는 고용하려는 장소에서 진행 중인 노동분쟁해결, 또는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년 이내에 양 당사국의 자연인과의 서비스 계약과 관련된 불법체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계약을 법인에 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불법체류 발생시 양 당사국은 정보를 공유한다.

## 나. 그러한 분쟁에 관련된 인의 고용

### 5. 상용방문자

가. 대한민국은 상용방문자에게 최대 90일까지 일시 입국을 허가한다.

그리고

나. 인도는 상용방문자에게 최대 180일까지 또는 1회 방문시 180일 체류 요건으로 180일을 초과하는 최대 5년의 기간 동안 일시 입국을 허가 한다. 그리고

가호 및 나호상의 상용비자는 상용방문자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발급된다.

- 1) 일시 입국에 적용되는 출입국 조치에 합치할 것
- 2) 다른 쪽 당사국의 국적 증명을 제출할 것
- 3) 주재국에서 상업적 주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법인의 피고용인, 그리고
- 4) 방문하는 당사국 내에 있는 재원에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상용방문자

어느 당사국도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노동시장 영향평가를 요구하거나 상용방문자의 일시 입국과 관련한 수량제한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6. 기업내 전근자

각 당사국은 달리 출입국 조치에 부합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내 전근자에게 대한민국의 경우 초기기간 2년, 그리고 인도의 경우 초기기간 1년, 또는 계약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일시 입국을 허용한다. 체류기간은 다음과 같이 연장될 수 있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이에 기초하고 있는 조건들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경우, 그리고

나. 인도의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위의 조건이 신청자에 의하여 여전히 충족될 경우

어느 당사국도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노동시장 영향평가를 요구하거나 기업내 전근자의 일시 입국과 관련한 수량제한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7. 전문가

각 당사국은 부속서 8-가에 규정된 전문직종에서 계약서비스 공급자 또는 독립전문가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다른 쪽 당사국 전문가가 달리 일시 입국에 적용되는 출입국 조치에 따르고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초기기간 1년 또

는 계약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그 전문가에게 일시 입국을 허용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국적 증명
- 나. 주재국의 법적 실체가 전문가의 서비스를 사용하겠다는 계약서를 포함하여 전문가가 고용되는 것을 증명하고 입국 목적을 명시한 서류, 그리고
- 다. 관련된 최소한의 교육 요건 또는 대체 자격의 취득을 입증하는 서류

#### 제 8.4 조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고용

각 당사국은 기업내 전근자·계약서비스 공급자 또는 독립전문가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일시 입국에 적용되는 출입국 조치에 따르고, 관련 취업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러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게 일시 입국 및 취업을 허용한다.

#### 제 8.5 조

#### 규제의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자연인의 일시 입국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질의에 대응하기 위한 접촉선 또는 그 밖의 메커니즘을 유지 또는 설립한다. 이 접촉선은, 기업인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상용방문자가 신고하고 설명을 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창구가 된다.

2. 가능한 한 각 당사국은 자연인의 일시 입국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 규정의 공표와 발효일 사이에 합리적인 기간을 허용하고, 그러한 통보는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3.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양 당사국은 일시 입국을 위한 신청 과정과 관련된 현행 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 제 8.6 조

## 문제해결

양 당사국의 관련 당국은 이 장의 이행 및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또는 일반적인 문제를 (자국의 자연인의 일시 입국에 적용되는 국내법·규정 및 그 밖의 유사한 조치의 틀 안에서) 호의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제 8.7 조 분쟁해결

1. 당사국은 이 장에 의한 일시 입국 거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이 협정의 제14장(분쟁해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입국의 권리에 관한 규정의 위반에 관련된 사안
- 나. 관행의 유형과 관련된 사안, 그리고
- 다. 관행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자국의 자연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내적으로 이용가능한 행정적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

2. 재심 절차를 포함한 국내적 행정 구제절차를 개시한 이후 1년 이내에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사안에 대한 최종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하고,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유가 자연인이 초래한 지역에 귀속되는 것이 아닌 경우, 제1항 다호에서 언급된 구제절차는 모두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

### 제 8.8 조 유 보

이 장에 따라 각 당사국이 한 약속은 제6장(서비스무역)의 각 서비스 분야에서 기재된 조건·유보 또는 제한에 따른다.